주식회사 더퍼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발기인총회 의사록

1. 일시 :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전 9:00
2.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, 41층(여의도동, 파크원 타워2)
3. 출석인원 및 주식수

발기인 총수	1명,	주 식 총 수	60,000주
출석발기인수	1명,	출석주식총수	60,000주

4. 부의안건 :
 1) 정관승인의 건
 2) 이사 선임의 건
 3) 감사 선임의 건
 4) 대표이사 선임의 건
 5)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
 6)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의 건

5. 의사경과:

- 단독 발기인 이준구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,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한 바, 단독 발기인 이준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즉,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- **제 1호 의안 : 정관 승인의 건**

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, 단독 발기인은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- **제 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**

 의장은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, 이사 선임에 대하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고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

사 내 이 사	이 준 구	(1960년 05월 27일 생)
기타비상무이사	서 길 원	(1974년 09월 02일 생)
기타비상무이사	이 호 승	(1979년 11월 05일 생)

- **제 3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**

의장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, 감사 선임에 대하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고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
(단, 감사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 규정을 준수하다).

감　　사　박 승 국 (1966년 02월 20일 생)

- **제 4호 의안 : 대표이사 선임의 건**

의장은 정관 제36조에 따라 초대 대표이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, 대표이사 선임에 대하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고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대표이사　이 준 구 (1960년 5월 27일 생)

- **제 5호 의안 :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**

의장은 정관 제3조에 따라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, 최초의 본점 주소 및 장소는 발기인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아래 장소를 본점으로 결정하다.

본 점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, 41층
(여의도동, 파크원 타워2)

- **제 6호 의안 :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**

의장은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정관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지를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자 전원 이에 찬성하였고 선임된 조사보고자도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.

조사보고자 감　　사　박 승 국
기타비상무이사　서 길 원
기타비상무이사　이 호 숭

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위하여 휴회하였다가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.

위 보고자는 이사들을 대표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를 심의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(폐회시각 오전9시30분)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2025. 7. 16.

주식회사 더퍼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(법인)

의장 및 발기인 이 준 구 (인)